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검 토 보 고

〈경찰관 대상 가정폭력범죄 대응 교육 정기실시 근거〉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05호)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40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 참고자료	
1. 경찰청의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교육현황	9

I. 제안경위

【민형배의원안】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0.
3. 회부연월일 : 2025. 10. 13.

【이훈기의원안】

1.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20.
3. 회부연월일 : 2025. 10.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형배의원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초동 대응을 개선하고 경찰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서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증상·사

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초기에는 드러나기 어렵고, 반복성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전 신호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경찰관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관련 인력의 교육 절차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교육을 규정하지만, 실제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영국 등은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위험 신호 식별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기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경찰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

【이훈기의원안】

최근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교제관계에서의 폭력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고, 처음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었던 해당 범죄가 차후 강력사건으로 발전하여 중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바 경찰의 초동대응역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들은 친밀한 관계나 신뢰관계에 기반한다는 점, 초기에는 외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는 점 또는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특유한 사전적 신호를 가진다는 점 등 고유한 특징을 나타냄. 따라서 효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이러한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에 대한 전문 교육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을 직접 대응하는 사법경찰관 전체의 역량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대두됨.

이에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2건의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경찰관 대상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 구체적으로, **민형배의원안**은 ① 경찰청장이 전(全)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압적 통제, 비신체적 학대 및 성평등 인식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②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훈기의원안**은 ① 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징과 유형, 초기대응전략, 각종 사전(事前) 위험신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②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민형배의원안	이훈기의원안
<신 설>	제4조의2(가정폭력범죄의 대응 교육) ① 경찰청장은 전(全)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압적 통제, 비신체적 학대 및 성평등 인식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제4조의2(가정폭력범죄의 대응 교육) ①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징과 유형, 초기대응전략, 각종 사전(事前) 위험신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정폭력

현행	민형배의원안	이훈기의원안
	<u>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친밀 관련 범죄는 관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¹⁾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험신호를 조기에 식별하여 적시에 법적 보호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 필요가 있음.

○ 현재 경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17조제3항²⁾ 등에 근거하여, 스토킹·교제폭력, 가정폭력·학대대응, 여성·청소년 범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³⁾.

1) 경향신문(2026.3.26.),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왜 못 막나...“법 제도와 활용 모두 필요”」

2) 스토킹처벌법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대상으로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경찰관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부재한 상태임.

□ 이에 2건의 개정안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재범과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다만, 2건의 개정안은 직무와 상관없이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 대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으로 교육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2025년도 기준으로 가정폭력·학대대응 실무과정 등 17개 과정에 약 59,190명이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참고자료: 2025년 기준 경찰청의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교육현황).

4) 경찰청장 등이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459호)에 대한 경찰청 의견(2026년 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경찰청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범죄 대응에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보다 대상 범죄들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으로 교육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미국, 영국 등은 친밀 관계 범죄 관련하여 모든 경찰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가별 경찰 대상 친밀 관계 범죄 관련 교육 제도 비교⁵⁾>

구분	한국	미국 뉴저지주	영국 웨일즈
교육대상	특정 직무자 한정/신임위주	모든 경찰·검사 대상 의무화	모든 경찰·공공기관 의무화
교육시기	신임교육/필요시	임용 후 90일내/ 매년 정기교육	임용시/매2-3년 갱신
교육내용	사건처리·법률·초 동 조치 중심	피해자 중심, 위험평가, 맞춤형 실무	피해자중심, 젠더 인식교육
모든 경찰 의무화 교육 법률 유무	없음	N.J.Stat. §2C;25-20	VAWDASV Act 2015

주: VAWDASV Act 2015는 Violence against Women, Domestic Abuse and Sexual Violence(Wales) Act 2015를 뜻함.

자료: 각 국 법령, 정부자료 및 경찰청 제출자료

□ 한편, 2건의 개정안에서는 교육의 목적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교육주체, 교육내용 등에서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2건의 개정안은 교육내용을 예시하면서 하위 법령(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을 법문에 직접 규정할 경우 이후 법률 개정의 번거로움과 법문 표현의 체계적 간결성 유지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 및 기본 원칙만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5) 「친밀 관계 폭력 범죄 대응 경찰 교육 국제 비교와 입법 과제」(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2025.9.15.)

구 분	민형배의원안	이훈기의원안
교육주체	경찰청장	경찰관서의 장
교육대상	전(全) 경찰관	소속 경찰관을 대상
교육목적 및 내용	강압적 통제, 비신체적 학대 및 성평등 인식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가정폭력범죄의 특징과 유형, 초기대응전략, 각종 사전(事前) 위험신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교육주기	정기적	매년 1회 이상
구체적 내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 참고로, 2건의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및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2건도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⁷⁾.

- 6) (예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 2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민형배의원안 (의원번호 제2213506호)	이훈기의원안 (의안번호 제2213641호)
제17조의5(스토킹범죄의 대응 교육) ① 경찰청장은 전(全)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압적 통제, 비신체적 학대 및 성평등 인식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스토킹범죄의 대응 교육) ①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징과 유형, 초기대응전략, 각종 사전(事前) 위험신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1] 경찰청의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교육현황

(2025년 기준)

교육과정명		교육 대상 (정원 기준)	교육 인원	교육 시간	주관
1	가정폭력·학대대응 실무과정	피해자보호팀 673명 (가정폭력·학대 담당)	671명	1일	시도청 교육센터(기초)
2	가정폭력·학대 예방심화과정	피해자보호팀 673명 (가정폭력·학대 담당)	200명	5일	경찰인재 개발원(심화)
3	가정폭력·학대예방 강사양성과정	가정폭력·학대 대응 과정 동료강사 활동 희망자	18명	5일	경찰인재 개발원
4	피해자보호팀 전문 위탁교육	피해자보호팀 673명 (가정폭력·학대 담당)	80명	1주	경찰청
5	사회적약자 보호 역량 강화과정 (국외 위탁교육)	경정 이하 토론수업 및 연구 수행이 가능한 영어능력 우수자	10명	4주	경찰청
6	스토킹대응실무과정	피해자보호팀 168명 (스토킹·교제폭력 담당)	318명	1일	시도청 교육센터(기초)
7	스토킹·교제폭력 대응심화과정	피해자보호팀 168명 (스토킹·교제폭력 담당)	100명	5일	경찰인재 개발원(심화)
8	스토킹·교제폭력 담당 전문화 위탁교육 과정	스토킹 담당 중 장기근무자 (1년이상) 173명	86명	5일	경찰청
9	스토킹·교제폭력 대응강사양성과정	스토킹대응실무과정 동료강사 활동 희망자	10명	5일	경찰인재 개발원
10	현장실무Ⅲ (여성·청소년)	지역경찰 50,410명 (순찰팀장, 순찰팀원)	2,376명	2일	시도청 교육센터(기초)
11	현장전문가Ⅲ (여성·청소년)	지역경찰 50,410명 (순찰팀장, 순찰팀원)	171명	5일	경찰인재 개발원
12	OJT 교육	지역경찰 팀장의 진행으로 팀원들과 토론	49,991명	상시	지역관서
13	여청수사실무과정	여청수사관 3,892명	3,892명	1일	시도청 교육센터(기초)
14	신임수사관 수사실무과정	여청수사에 신규 전입한 수사관 대상 교육	687명	35시간	시도청 교육센터(기초)
15	수사지휘과정	여청수사 과장급 교육	40명	70시간	수사연수원
16	경감역량향상과정	여청수사 팀장급 교육	390명	35시간	
17	여청수사실무과정	여청수사관 대상 실무교육	150명	70시간	
합 계			59,190명		

자료: 경찰청

문 의 처
02-6788-5051